

『제6기 구미시 지역보건 의료계획안』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4년 10월 24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4년 10월 27일

라. 상정일자 : 2014년 11월 05일

제9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
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구미보건소장 구 건 회

나. 제안이유

- 「지역보건법」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6기(2015~2018년) 구미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지역실정에 맞게 수립하여
- 보건소가 중심이 되어 지역주민, 보건의료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지역보건사업을 수립함으로써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함.

다. 주요내용

구분	구미보건소	전산보건소
개별 사업	○ 건강한 삶 유지기(성인건강관리) ○ 건강한 삶 누리기(노인건강관리) ○ 건강한 삶 나누기(취약계층건강관리) ○ 건강한 삶 다지기(아동·청소년건강관리) ○ 건강한 삶 준비기(임산부·영유아 건강관리) ○ 건강한 삶 알리기(통합건강증진사업홍보) ○ 건강검진사업 ○ 출산장려사업 ○ 암 관리사업 ○ 정신보건사업 ○ 의료비지원사업 ○ 진료 및 검사 ○ 의·약무 관리사업 ○ 감염병 예방 관리사업 ○ 건강도시사업	○ 성인기 건강플러스사업 ○ 노년기 건강플러스사업 ○ 취약계층 건강플러스사업 ○ 아동·청소년 건강플러스사업 ○ 임산부·영유아 건강플러스사업 ○ 건강검진사업 ○ 모자보건사업 ○ 암 관리사업 ○ 정신보건사업 ○ 의료비지원사업 ○ 진료사업 ○ 각종 실험 및 검사 ○ 의·약무 관리사업 ○ 감염병 예방 관리사업

라. 참고사항

- 「지역보건법」 제3조,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백 인 업

○ 본 계획안은

- 시민이 행복한 건강도시 구현을 위해 「지역보건법」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지역주민, 보건의료 관련 기관·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을 4년마다 수립하는 것으로서

- 제6기 구미시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은 2015년에서 2018년까지 변화하는 지역실정에 맞는 통합건강 증진사업 추진과 보건기관 역량 강화를 위해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임.

- 지역현황 분석 및 주민 의견조사 결과 최우선으로 해야 될 사업으로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이 선정되었으며 중장기 추진과제

로서는 지역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, 지역보건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, 지역보건기관 자원 확충 등이 포함된 장단기 계획안으로서 구미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은 사항임.

-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- 5. 토 론 요 지 : 생 략
- 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- 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